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8889호, 2022. 6. 10. 일부개정, 2022. 12. 11. 시행)함에 따라,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,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, 수소발전량 계약, 입찰시장 개설물량, 구매이행 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4까지)
- 나.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, 수수료,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4조의25부터 제34조의27까지)
- 다.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,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6조의2)
- 라.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7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

- 전화 : 044-203-3955
- 팩스 : 044-203-4766
- 이메일 : adrue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(전화 044-203-39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제34조의20(수소발전량 구매자 등) ① 법 제25조의6 제1항에서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② 법 제25조의5제6항 후단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은" 구매자의 전기사업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장에서의 지난 연도 전력거래량의 비율 또는 자발적 구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입찰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. ③ 제2항의 수소발전 총구매량은 제34조의23제1항에서 정한 입찰시장 물량을 말한다.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을 공고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제34조의21(입찰시장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5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.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입찰시장에 참여한 수소발전사업자 중 낙찰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 1. 발전원가 2. 지역주민의 수용성 3.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.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5. 에너지효율 제고 ③ 입찰시장의 경쟁촉진 등을 위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가격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량의 부족 등으로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은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 따른다. 제34조의22(수소발전량 계약) ①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" 제34조의21제3항에 따라 정해진 계약가격을 보상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. ② 제1항의 계약가격을 보상하기 위한 계약의 형태, 계약의 기간 등 계약의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< 신 설 >	제34조의23(입찰시장 개설물량) ①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량은 지난 연도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.

현행	개정안
	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량은 직전년도 입찰시장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.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수소발전 구매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 신설 >	제34조의24(구매이행비용 회수)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회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 신설 >	제34조의25(관리기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

현행	개정안
	2.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둘 것 3. 상시 임직원 300인 이상일 것 4. 전력 및 재생에너지 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입찰시장의 개설·운영 및 계약에 관한 업무 2. 수소발전량 계량 및 구매량의 확정에 관한 업무 3. 수소발전량 거래대금 및 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·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4.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정·개정에 관한 업무 5.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
< 신설 >	제34조의26(거래수수료) ①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$\text{수수료(원/킬로와트시간)} = \text{관리기관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}$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간 운영비 ÷ [연간 예상 수소발전량(킬로와트시간)×2] — ② 제1항의 연간 운영비는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설비, 수선유지비, 인건비, 용역비 등의 직접비용으로 산정한다.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	제34조의27(관리기관 지정신청 및 취소) ① 법 제25조의7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.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.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·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<u>현황에 관한 자료</u>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. 1.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.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·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	제36조의2(수소의 날) ①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때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때

현행	개정안
제57조(업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. ②~④ (생략)	<u>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 제57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.</u> 1.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의 지원 업무 2.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<u>확인</u>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 ②~④ (현행과 같음)